

綜合所得稅制의 紙上配當金



— 現行制度를 中心으로 —

稅務公務員教育院講師

公認會計士 申 瓚 秀
稅務士

1. 綜合所得稅制와 分類所得稅制

所得稅의 課稅方法에는 두가지 形態가 있다.

그 하나는 納稅者에 歸屬되는 各種의 所得을 一括하여 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이며, 다른 하나는 各種의 所得을 그 所得源泉에 따라 事業所得·利子所得·配當利子所得·勤勞所得等·所得源泉制로 나누어 個別的으로 課稅하는 分類所得稅制이다.

從前 우리나라의 所得稅는 分類所得稅制에 立脚하고 있었으나 法律第1966號로 制定된 現行所得稅法(1967年 11月 29日字公布)은 限定的 綜合所得稅制에 立脚하고 있다. 綜合所得稅制는 원래 高所得層에 重課하고 低所得層에 輕課하는 租稅負擔公平의 原則에 附合하는 것이며 한편 稅源確保라는 國家財政 政策의 目的에서도 要請되는 制度이나 이를 運用하는데에는 相當한 難點이 있을 것으로 生覺된다.

各國所得稅制度에 對하여 살펴본다면 綜合所得稅制는 獨逸·美國等에서 發達한 制度이며 分類所得稅制는 英國·佛蘭西·伊太利 等에서 發達한 制度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類所得稅制를 採擇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漸次 綜合所得稅制를 併課하고 있는 實情이다.

2. 現行綜合所得稅制度의 概要

이번에 制定한 綜合所得稅制는 改正前 分類所

得稅制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各分類所得別 一定額以上の 高所得者에 限하여 住所地에서 各所得을 合算하여 課稅하는 制度이다. 이것은 分類所得稅制에서 綜合所得稅制를 轉換시키기 爲한 過度의 制度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所得制度에 있어서 큰 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1)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는 다음에 揭記한 分類課稅所得金額을 超過하는 者로서 그 分類課稅所得의 年間合計額(自 1月 1日 至 12月 31日)이 500 萬원 以上이 되는 者에 있다. (所得稅法 第59條 同法施行令第110條)

① 不動產所得에 對한 分類課稅所得金額이 年 150 萬원 以上인者

② 配當利子所得에 對한 分類課稅所得 金額이 年 150 萬원 以上인者

③ 事業所得에 對한 分類 課稅所得金額이 年 300 萬원 以上인者.

④ 勤勞所得에 對한 分類 課稅所得이 年 240 萬원 以上인 者.

⑤ 其他所得에 對한 分類 課稅所得 金額이 年 100 萬원 以上인 者.

그러나 綜合所得計算의 對象에는 山林所得, 勤勞所得 年金과 退職給與 및 非課稅所得과 免除所得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所得稅法 第62條 第2項)

2) 綜合所得稅 納稅義務의 排除

年間所得金額이 500萬원 以上이 되는者라 하더라도 課稅所得 金額이 前記各號의 綜合所得對象金額에 各各 未達하는 境遇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所得稅法 施行令 第111條 第1項 第1號)

例컨대 어느 特定人의 年間所得이 事業所得 250萬원, 配當利子所得 100萬원, 不動產所得 100萬원, 勤勞所得 100萬원, 合計 550萬원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各 分類所得金額이 綜合所得對象金額에 各各 未達하기 때문에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것이다.

또한 單一事業場의 所得金額으로서 年間 500萬원 以上인 者의 境遇도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所得稅法 施行令 第111條 第1項 第2號)

3) 綜合所得의 課稅地

綜合所得稅의 課稅地는 綜合所得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되어 있다. (所得稅法 第60條)

이것이 各事業場에서 課稅하는 分類所得稅와 좀 다르다.

만일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住地가 2個以上인 境遇는 그 主된 住所地(即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依한 住民登錄地를 課稅地로 하고 있다. (所得稅法 施行令 第112條)

4) 綜合所得稅額의 計算

綜合所得稅額은 다음의 區分에 依한 各稅率을 遞次로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의 合計額(以下 綜合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에서 綜合所得 加算稅가 있을 때에는 이를 包含한다) 各分類所得의 算出稅額을 控除한다.

다만 綜合所得金額에 配當利子所得(紙上 配當金을 包含한다)이 包含된 경우에도 그 配當所得金額에 非公開法人의 法人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金額을 控除한다. (以下 綜合課稅決定稅額이라 한다)

所得金額	稅率
20萬원 以下の 金額	15%
2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20%
5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30%
12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40%
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50%
5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55%

例컨대 事業所得이 400萬원과 甲種配當利子所得 200萬원(紙上配當金包含)이 있는 納稅者의 綜合所得稅額을 計算하면 다음과 같다.

區分	所得金額	稅額
分類所得稅		
① 事業所得	400萬원	183.5萬원
② 甲種配當利子所得	200萬원	30.萬원
合計(①+②)	600萬원	213.5萬원
綜合所得稅		
③ 綜合課稅算出稅額	600萬원	257萬원
(控除)		
④ 事業所得稅	400萬원	183.5萬원
⑤ 甲種配當利子所得에 대한 稅額(註)	200萬원	60萬원
綜合所得稅決定稅額		
(③-④-⑤)		13.5萬원
(註) 配當利子所得額×非公開法人의 法人稅率		

5)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 節次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節次는 綜合所得稅納稅義務 있는 者가 當該 年度分の 綜合所得金額을 그 翌年 5月末日까지 住所地 또는 居所地의 所管稅務署長에게 綜合所得에 對한 申告書와 自進納付計算書를 添付하여 自進申告納付하도록 되어 있다. (所得稅法 第65條, 第66條 同法施行令 第114條 第1項 및 第115條)

만일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 있는 者가 申告를 한후 住所地 또는 居所地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날로부터 10日內에 前住所地의 所管稅務署長과 新住所地의 所管稅務署長에게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 住所地變更 申告書를 各各 提出하여야 한다. (所得稅法施行令 第114條 第2項)

또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 있는 者가 綜合

所得稅의 決定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綜合所得金額 決定期日內에 被相續人의 住所地 所管稅務署長에게 死亡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所得稅法施行令 第114條第3項) 왜냐하면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있는 者가 綜合所得稅 決定期日前에 死亡하였을 때에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기 때문이다. (所得稅法施行令 第111條 第2項)

6) 綜合所得稅의 加算稅

만일 綜合所得稅 納稅義務 있는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한 金額이 申告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는 경우 또는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付納한 金額이 納付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加算稅를 徵收한다. 所得稅法 第68條)

即 綜合所得 金額의 申告를 期限經過後에 하였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綜合課稅 決定額의 100分の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綜合所得稅 無申告加算稅로 하여 徵收한다.

만일 이 경우 綜合課稅決定稅額이 없을 때에는 綜合課稅算出稅額의 100分の 1에 相當하는 金額을 徵收하게 된다.

또한 申告한 綜合所得金額이 申告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그 未達하는 金額에 該當하는 稅額의 100分の10에 相當하는 金額을 過少申告 加算稅로 徵收하고, 綜合所得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한 稅額이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는 경우는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分の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無納付加算稅로 하여 徵收한다.

3. 紙上 配當金

紙上配當金이란 實際支給하는 利益配當金과, 區別되는 一種의 擬制配當金을 말한다.

即 現行所得稅法에서 採擇하고 있는 綜合所得稅에 있어서는 配當利子所得이 綜合所得計算對象에 包含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法人은 大部分 非公開法人(同族法人)이기 때문에 法人에 있어서 營業成績

이 좋나 하더라도 利益配當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現行所得稅法에서는 配當金을 綜合所得計算에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綜合所得 稅賦課를 避하기 爲해서도 이러한 現象이 더욱 盛行할 것이라 豫想하고 이를 防止하기 爲해서 紙上配當金制度를 新設한 것이다.

即 非公開法人의 各事業年度 留保所得은 株式持分比率에 따라 各株主에게 配當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는데 이를 紙上配當金이라 한다.

따라서 紙上配當金은 綜合所得稅를 合理的으로 運用하기 爲하여 마련한 擬制配當의 一種이다.

換言하면 數個의 事業場을 가진 個人의 各事業場에서 생긴 所得의 年間合計額이 50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 그 個人에게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으나 數個의 法人體를 가진 財閥이 그가 經營하는 法人으로부터 配當金を 支給받지 않을 境遇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事業을 經營하는 低所得層에 不當한 負擔을 招來하는 結果가 되므로 이 矛盾을 防止하기 爲해서 所得稅法에서는 非公開法人의 留保所得을 株主에게 配當한 것으로 看做하는 制度를 마련한 것이다.

7) 非公開法人의 留保所得이란?

紙上配當金은 非公開法人의 留保所得을 株主들에게 配當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으므로 이 留保所得의 概念에 따라 그 配當金의 金額은 달라진다.

所得稅法에서 規定한 留保所得은 法人稅法上 當該事業年度의 所得에서

① 移越缺損金과 前事業年度로부터 移越된 益金

② 當該事業年度의 法人稅相當額

③ 商法 第458條의 規定에 依하여 積立한 當該事業年度의 利益準備金 및 剩餘金의 處分에 依한 配當賞與 또는 其他 社外流出로 認定된 金額 등을 控除한 金額으로 하고 있다. (所得稅法 第22條 第2項, 同法施行令 第56條第1項)

그러나 여기에서 特別注意하여야 할 點은 “法

人稅法上 當該事業年度の 所得”의 概念이다 이것은 課稅所得에 非課稅所得을 合算한 金額으로서 企業所得의 概念과는 別個의 것이다.

따라서 法人이 當該事業年度の 企業所得 全額을 利益準備金, 配當金 및 法人稅로 處分하였다 하더라도 企業所得을 超過하는 “法人稅法上 當該事業年度の 所得” 部分이 있을 경우에는 自動的으로 法人의 留保所得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紙上配當金の 對象이 된다.

2) 紙上配當金の 支給時期

紙上配當金の 支給時期는 各事業年度の 決算 確定日(株主總會決算承認日을 말한다)로 看做하고 있으며 만일 法人의 各事業年度終了後 45日以內에 決算을 確實하지 아니한 때에는 45日에 該當하는 날을 紙上配當金の 支給日로 보고 있다. (所得稅法 施行令 第57條)

3) 紙上配當稅의 擔稅者

紙上配當金에는 一定率의 稅率을 適用하여 配當利子稅를 源泉徵收하기로 되어 있다. 이 稅金을 紙上配當稅라 한다. 이 紙上配當稅의 擔稅者는 非公開法人의 株主이다. 그러나 紙上 配當金은 所得稅法에서만 規定하고 있으며 法人稅法에서는 이에 對하여 規定한바 없기 때문에 法人株主에 對해서는 이 稅金이 賦課되지 않는다.

4) 紙上配當稅에 對한 調整

非公開法人이 紙上 配當稅가 賦課된 留保所得中 그 一部 또는 全部를 그 後 法人의 剩餘金 處分에 依하여 配當하는 경우 當該配當利子所得稅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이 源泉徵收를 하게 된다 (所得稅法 施行令 第59條)

첫째 이 紙上配當金이 株主의 綜合所得稅에 合算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合算하지 아니한 部分의 配當金에 對하여 10%의 稅率을 適用하여 甲種配當利子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둘째, 이 紙上配當金이 株主의 紙合所得稅에 合算된 경우에는 甲種配當利子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않는다.

다만 株式의 讓渡讓受로 因하여 株主의 名義가 相異할 경우에는 그 配當金에 對하여 15%의 稅率을 適用하여 甲種配當利子로 所得稅를 徵收한다.

4. 紙上配當金制度 運用上의 諸問題點

紙上配當制度는 綜合所得稅制의 合理的 運用 方案으로 構想된 制度이다.

그러나 이 制度를 運用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紙上配當制度는 財閥에게 綜合所得稅를 賦課하기 爲하여 마련한 制度라는 點에서 우선 首肯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生覺할때 財閥이 自己가 所有하고 있는 非公開法人의 株式를 自己가 經營하는 다른 法人의 所有로 變更하는 境遇는 法人株主에 對하여는 紙上配當稅를 賦課할수 없기 때문에 이 部分에 對하여 紙上配當稅의 賦課를 避할 수 있다.

따라서 紙上配當金制度에서 期하는 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지가 疑問이다.

둘째, 企業所得과 法人稅法상의 所得과는 恒常附合되지 않는다. 따라서 企業所得을 超過하는 法人稅法상의 所得에 對하여는 언제나 紙上配當金이 課稅된다.

그러므로 企業會計의 立場에서 보면 이部分에 對하여 租稅가 二重負擔이 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셋째, 法人의 紙上配當稅가 賦課된 所得中에서 그 一部 또는 全部를 剩餘金處分에 依하여 配當할 경우 이에 對하여 源泉徵收를 하려면 그 配當金이 支給되는 株主의 綜合所得에 合算되었는가의 與否를 確認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時間的으로 보나 勞力으로 보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 生覺된다.

이와같이 諸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紙上配當制度가 앞으로 어느 程度의 成果를 거둘 수있는지가 注目되고 있다.